

충북 충주 지

발전사업 허가증

1.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2. 상 호: 태양광 발전소

3.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태양광발전

사업장소: 충북 충주시

5. 사업규모:

원동력의 종류: 태양광

설비용량: 199.68kW

공급전압 : 380V

주파수: 60Hz

6. 특정공급구역: 해당없음

7. 사업준비기간: 2025년 11월 06일 - 2028년 10월 20일

8. 허가조건: 별도불임

9. 기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전사업을 허가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충 주 시





충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허가 알림[이상0 외 2, [redacted]]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충주시 [redacted] 상의 공작물(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지 및 진입로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고,
2.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은 면허세 및 이행보증금 등을 납부한 후부터 발생되오니, 반드시 납부·제출한 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민원과(개발행위팀) - 개발행위 허가내역(허가번호 2026-066)

소 재 지 읍면동	지 번	지 목	지 적 (㎡)	사업면적(㎡)		사업기간	사업목적	신 청 인
				부지	도로			
계	6필지		16,341	14,727				
				14,877	50			
[redacted]	[redacted]	대 과 담 전 전 담	758	758	-	2026.05.허가일 - 2027.06.30.	공작물(태양광발전 시설)설치에 따른 부지 및 진입로 조성	[redacted]
			7,371	7,371	-			
			2,334	2,334	-			
			975	975	-			
			4,569	2,905	50			
			334	334	-			

□ 허가조건 (붙임 1,2,3 참조)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금27,000원(토지의 형질변경)을 납부**하여야 함.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금9,000원(공작물 설치)을 납부**하여야 함.
- 지역개발공채 **금22,090,000원 매입**하여야 함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및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이행보증금 금48,800,0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
(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으로 예치하는 경우 허가만료일로부터 2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예치)
- 사업 착공 전 **부지 내 배수시설이 기존 배수로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후 시공하여야 함.

PPA 고객 신청 (변경) 접수증명서

접수번호			접수내용	신설 (발전기)
전 공 급 자	사업자명		발전소명	태양광발전소
	수전공급번호 (발전공급번호)		전화번호	
	거래대금종보	(유대전화)		(이메일)
수전계약번호			발전계약번호	
설치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발전원	01 태양광	계약전력	198 kW	
공급방식	738 삼상4선(20/380V)	설비용량	198.4 kW	
공급전압	380V	설비유형	3 일반선로 (한전)	
전력거래형태	한전거래	적용약관(규정)	개별전력수급계약(PPA)	
사업자구분	03 발전사업자	사업자번호		
발전허가번호		발전사업준비기간만료일자	2028-10-20	
개발행위허가	대상	개발행위만료일자	2027-06-30	
전기공사업체		연락처		
설비관리자		연락처		

연계 가능 여부는 기술검토 결과가 나온 후 확인이 가능함을 영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가 취소되는 경우

1. 신청자가 한전의 접속방안 안내 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접속점 협의에 불응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신청자가 기술검토비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2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입금회고를 받았으나, 회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3. 신청자가 접속공사비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30일까지 입금하지 아니하여 입금회고를 받았으나, 회고 후 7일까지 입금하지 않을 경우
4.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비대상으로 허위 접수하거나, 접수시 제출한 개발행위허가 비대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
5. 접속공사비 입금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접속공사 착공에 불응하거나 지연할 경우
6. 한전 접속공사 현장시공완료 안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음에도 신청자의 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7. 발전사업허가 용량과 실제 시설용량의 차이가 10% 를 초과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업허가용량이나 실제시설용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8. 발전사업허가의 사업준비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용 전력구입계약에 한함)
9. 발전설비 설치장소가 다른 발전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10. 연계용량 검토 결과 연계용량 부족 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여 신청자에게 공을배전선로 신설·제출·공 비용 부담을 안내하였으나, 신청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신청접수 후 상기 1~9호의 사유로 신청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접수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전력구입계약 신청 및 계약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상기 전력구입계약 신청 내용 및 신청서의 [전력구입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PPA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05월 26일

충북본부 충주시사장

(인)

[관련문의 : 043-251-2233]

용자금 대출심사가 가능 사전확인서

아래의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을 대해 대출심사가 가능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업체명) : []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 [])

◆ 투자지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

◆ 대상 시설명 : [] 태양광발전소 / 198.4kW

◆ 용자신청 예정금액 : 340백만원

◆ 담보물건 확보 예정액

(단위: 백만원)

동 산	부동산	신용보증기금	기타 담보
	○		

* 동 사전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404-82-01420

금 융 기 업 : 새마놀금고

지점

)



_____ 귀하